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신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1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제43조 및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제품 전성분 공개 등 연장 기준 규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통지서 마련 등 연장 절차 규정

나. 개선명령 절차 규정(안 제7조의3)

개선명령 시 명시해야할 사항(제품명, 개선명령 사유 등), 개선명령 받은 자가 결과 보고시 포함해야할 사항(이행일, 증빙서류 등) 등 규정

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43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광고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5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

간 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선명령)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0조제9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개선명령 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개선기간

5.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개선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 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개선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제8호”를 “법 제46조제1항제9호”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자료 및 제4항 ·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수 여부

4.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5.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조방식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연장신청사유		
	신고번호 (이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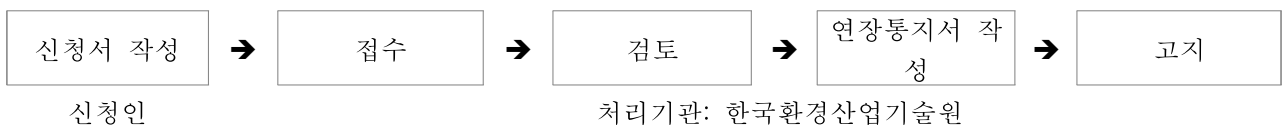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유효기간 연장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작성방법

1.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하여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제조 [] 수입		품목
	제 품 명			용도
	제 형			중량·용량·매수
	제 조 국 명 (수입의 경우)			제 조 회 사 명 (수입의 경우)
	연장신청 근거			
	신고번호			기존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번호			연장된 유효기간	
				(접수일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u> <u>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u> <u>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u> <u>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u> <u>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u> <u>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u> <u>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u> <u>호의2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u> <u>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u> <u>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u> <u>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u> <u>여야 한다.</u></p> <p>1. <u>제5조제2항의 안전확인대상</u> <u>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u> <u>본</u></p> <p>2. <u>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기준</u> <u>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u> <u>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u> <u>는 서류</u></p> <p>② <u>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u> <u>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u> <u>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u> <u>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u></p>

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거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

준 적합확인의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 4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 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선명령)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0조제9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개선명령 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에

<신 설>

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개선기간

5.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개선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선기간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정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신 설>

1. 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 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개선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4.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5.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

<p>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p> <p>2.~4. (생략)</p>	<p><u>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 준수여부</u></p> <p>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법 제46조제1항제9호----- ----- ----- ---</p> <p>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자료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변경신고 자료의 검토</p> <p>2.~4.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809